

의안번호	
의 퇴 인	정을호 의원
회 답 일	2024.08.13.
추계번호	24C2613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 (교원보호공제사업)	(제2항)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. 4.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2조 (교원보호공제사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 교원에 대한 학교 복귀 지원을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행법 제22조는 “교원보호공제사업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이의 범위로 ‘①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, ②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·상담·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, ③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’을 규정하고 있음
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 ‘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직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피해교원의 학교 복귀 지원’을 포함하는 경우의 보험비용 증가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움
 - 교육부는 '23년 “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(안)”을 발표하면서, 이의 ‘주요 표준 약관 담보 사항’ 중 하나로 ‘치료비·상담비’를 포함하였음
 - － 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신체적·정신적 치료 비용(치료비)과 교육활동 침해 교원(최대 15회)과 침해 여지 사안으로 소진된 교원(최대 10회)에게 지원되는 비용(상담비)으로 구성됨
 -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고려할 때, 법 시행시 현재 ‘표준 약관 담보 사항’으로 규정된 치료비·상담비 이외에 추가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이로 인한 보험비용 증가분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
- 따라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